

(2 시 간 연락 주셔서요.)

수신: 전우한, 김규선, 박재운, 14기영남,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522-7284 팩스/522-7285 email/m321@chollian.dacom.co.kr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국제연합(UN)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정부 최초보고서 심의회 참가

일 자 : 1996년 11월 14일

전송장수(표지 포함) : 장

보도자료

고문 및 기타 잔혹한 ·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따른 정부보고서 심의회 참가

안녕하십니까?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국제연합(U.N.)의 주요한 국제협약 중의 하나인 고문 및 기타 잔혹한 ·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제연합의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표들을 파견하였습니다. 한국정부 최초보고서를 검토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민간단체의 의견에 대한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고문방지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의 요약은 별첨하니 참조하십시오. 반박보고서를 공동제출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주주의 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교회인권센터**

전송 중 이상이 있으면 전화 522-7284 또는 팩스 522-72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정부 최초보고서 국제연합에 제출

국제연합(U.N.)의 주요한 국제협약 중의 하나인 고문 및 기타 잔혹한 · 비인도적 또는 글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협약을 승인한 당사국은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지 1년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온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4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부보고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해당정부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보고서 내용을 심사한 후, 일반적인 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권고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체별로 국제연합 회원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 광범한 인권분야의 전문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1995년 12월 협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보고서를 국제연합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고, 1996년 11월 11일부터 22까지 개최되는 제17차 고문방지위원회 회기종 심의받도록 예정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권고사항은 비록 한국정부에 대한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문방지협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문방지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을 한국정부는 국내에 적용해야 할 국제, 국내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민간인권단체 반박보고서 제출

고문은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신적 파괴를 가져오는 극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조차 빈번히 자행되어왔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기도 하였다. 이로인해 현재까지도 고문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4년에 한번 있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사는 한국의 고문과 관련된 인권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뜻깊은 기회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 부각시키기 마련인 부실한 정부보고서를 심사함에 있어 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에 종지부를 찍고.....(중간생략)....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각자의 창의와 자유가 보장되면, 다양성이 수용되는.....(중간생략)....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한국정부 최초보고서 서문에서 인용) 출범한 문민정부아래서 고문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실제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간 고문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민간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보고서 작성에 반영했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제연합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 비정부단체들을 참여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부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들이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정부 최초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한국인권상황의 개선에 보탬이 되고 민간인권단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민간인권단체의 대표로 차지훈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김수지(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씨를 제17차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 파견하였다.

3. 한국정부 최초보고서 실의 결과

이번 위원회에서는 러시아, 한국, 알제리, 우루과이, 폴란드, 조지아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하며, 한국정부 최초보고서는 11월 13일(현지시각) 하룻동안 이루어졌다. 위원회내에서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보고관 주판직씨(Mr. Bostjan M. ZUPANCIC 슬로바니아 현법재판소 판사)와 록미씨(Mr. Mukunda REGMI 네팔)를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법규정의 모호성,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50일의 구금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록미씨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가 올해 초 52차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제출했던 한국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러시아의 아코볼레프씨도 국가보안법에서 형법에 규정되지 않는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특히, 불고지죄에 대해 언급하였다. 결국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은 고문방지협약 제2조 2항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없다."에 위반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그외에 수사기관 종사자들과 특히, 의료인에 대해 고문방지과 관련된 교육이 없다는 사실과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문제, 고문범죄에 대한 조사시 공정성 보장 배상시 의료 및 재활 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고문방지를 위해 법규정보다 실재관행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있다 없다 등의 간략하고 궁색한 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한국의 고문상황과 관련해 이번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민간단체의 정보만 대변하였다며 민간인권단체보고서가 왜곡, 과장되었다고 말하는 등 결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정부대표로서 남들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과거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보고서를 정부 스스로 복사해 배포하는 등 국제사면위원회의 객관성을 보장하던 과거 행동과도 모순된 태도이다.

4. 민간인권단체의 의견

반박보고서를 제출했던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권고사항에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유감스러우나 권고사항 중 제 4, 5, 6, 7, 8항이 구체적인 권고 조치라는 점을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한국정부가 이번 최초 정부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받는 과정을 통해 고문으로 인한 과거인권 침해 및 현실을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그 실천을 약속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우려사항을 국내법제도와 관행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별첨> 고문방지위원회의 결론과 권고 요약

1. 서문

구체적이고 시간맞춰 제출된 한국의 최초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정부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A. 공정적인 면:

1. 93년 이후 달라진 많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
2. 법개정 또한 환영한다.
3. 사면과 같은 조치를 격려한다.
4. 법률구조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족스럽다.
5. 많지는 않을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처벌 및 고문으로 인한 자백을 거부한 사례들도 격려한다.
6. 한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의식도 감사한다.
7. US, France, Canada, Australia와의 상호법조약(mutual judicial treaties)을 격려한다.

B. 장애요소:

한반도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협약 2조 2항에 의하여 그 어떠한 특수한 상황도 고문이나 그의 비인도적 처우/처벌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C. 우려사항(Subject of concern)

1. 협약 1조와 일치하는 고문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2. NGO's Report에 따르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 많고,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 관행화되어 있음에 깊은 우려 표명한다. 잠안재우기 같은 관행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구속기간(또는 심문기간)이 너무 길다.
4. 신속, 공정한 조사, 조약? 보장 안되고 있다.
5.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규정 많아 자의적 적용소지 많다. 자의적 적용에 대한 매우 위험성 있다.
6. 정부보고서도 구제사례 1건만 언급, 보상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7. 수사기관의 1차 10일 구금기간동안 법원의 관여 절차없는 것 문제다.

1) 권고사항(Recommendations)

1. 조약 1조에 부합하는 고문에 대한 정의 규정 두어야 한다.
2. 국내법이 고문방지조약이나 기타 인권규약에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 종사자,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에 대한 교육 실시해야 한다. ✗
- ④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해야 한다.
- ⑤ NGO's 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례에 대하여 조사/수사하고 위원회에 서면보고하라. →
- ⑥ 구금기간 (30일, 50일) 너무 길다. 줄여라. ↗ 20~30일로 하기
⑦ 질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하라.
- ⑧ 유보(조약 21,22조) 철회하라.

1. 18종례사례
2. 26상식 26온·나·기
3. 18상·강·중·중·중·실·습·사·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도	
	C1 -3	10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522-7284 팩스/522-7285 email/m321@chollian.dacom.co.kr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목 : 국제연합(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심의 중

일자 : 1996년 11월 14일

전송장수(표지 포함) : 3 장

보도자료

고문 및 기타 임혹한 · 비인도적 또는 급속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따른 임혹경우 최초보고서 실무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네바에서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제17차 고문방지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협약을 승인한 당사국들이 본 협약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합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1995년 12월 동협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보고서를 국제연합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중에 한국정부 최초보고서를 심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지난 11월 13일 (현지시각) 한국의 고문과 관련된 인권상황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문과 관련된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는 이번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는 황역식 대사와 9명의 한국정부대표들이 참가하였고,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고 차지훈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김수지(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씨를 제17차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 파견하였습니다.

한국정부 최초보고서를 검토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 반박보고서를 공동제출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이하 소속 회원단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인권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주의 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 교회인권센타)

전송 중 이상이 있으면 전화 522-7284 또는 팩스 522-72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고문방지위원회의 각국 정부보고서의 심의

국제연합(U.N.)의 주요한 국제협약 중의 하나인 '고문 및 기타 잔혹한 ·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혐벌금지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 정부보고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해당정부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보고서 내용을 심사한 후; 일반적인 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권고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 회원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 대체 별로 뽑힌 인권분야의 전문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권고사항은 비록 한국정부에 대한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문방지협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문방지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으로 한국정부는 이를 국내에 적용해야 할 국제, 국내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의 심의

4년에 한번 있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사는 한국의 고문과 관련된 인권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뜻깊은 기회이다. 이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심의와 관련하여 한국인권상황의 개선에 보탬이 되고 민간인권단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 17차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번 위원회 회기중에는 러시아, 한국, 알제리, 우루과이, 폴란드, 죠지아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최초보고서는 11월 13일(현지시각) 하룻동안 이루어졌다. 위원회내에서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보고관 주판직씨(Mr.Bostjan M.ZUPANCIC 슬로바니아 현법재판소 판사)와 레그미씨(Mr.Mukunda REGMI 네팔)를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법규정의 모호성,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50일의 구금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다. 레그미씨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가 올해 초 52차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제출했던 한국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러시아의 야코블레프씨도 국가보안법에서 형법에 규정되지 않는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특히, 불고지죄에 대해 언급하였다. 결국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은 고문방지협약 제2조 2항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 관행화되어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

그의 수사기관 종사자들과 특히, 의료인에 대해 고문방지와 관련된 교육이 없다는 사실과 고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문제, 고문범죄에 대한 조사시 공정성 보장, 배상시 의료 및 재활 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고문방지를 위해 법규정보다 실제관행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구금기간동안 고문당한 사람에 대한 진술서.

-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해야 한다.
-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례에 대하여 조사/수사하고 위원회에 서면보고하라.
- 구금기간이 (30일, 50일) 너무 길다. 줄여라.
-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하라.
- 협약 21,22조를 한국정부가 유보한 것을 철회하라.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있다, 없다 등의 간략하고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한국의 고문상황과 관련해 이번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민간단체의 정보만 대변하였다며 민간인권단체보고서가 왜곡, 과장되었다고 말하는 등 결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정부대표로서 남북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과거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보고서를 정부 스스로 복사해 배포하는 등 국제사면위원회의 객관성을 보장하던 과거 행동과도 모순된 태도이다.

3. 민간인권단체의 의견

반박보고서를 제출했던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한국정부가 이번 최초 정부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받는 과정을 통해 고문으로 인한 폐거인권침해 및 현실을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그 실천을 약속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인권단체들이 지적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추가로 위원회에 답변하도록 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의 결론과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연히 지켜져야하며, 국내법제도와 관행을 이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수신: 민족협, 조동원 변호사, 사랑나방, 인의회 ①
 주제: 한미 한일 양간사 () (배기영 님)

발신: 차지훈 유 (Tel. 522-7284)

내용: UN 고문단장과 17차 회의 참석 일정 신의
 차정 및 말씀 알.

* 보도자료는 ~~한국정부이며~~ ~~한국정부이며~~

결정하고 연락수첩시온. 11월 11일. → 11일.

1. 17차 고문단장 회의

- 11월 9 ~ 22일.

- 신의 대상국가: 그리스, 핀란드, 우크라이나, 폴란드, 코자이

2. 한미 양간사 신의.

a. 11. 13 (수) 한미 양국 정부 회의 신의.

b. 일본 ① Mr. Bastian M. Zupancic. Slovenia.

② Mr. Regmi. Nepal.

c. 2차 Secession (10:30 ~ 12:15)

- 한미 양국 대표: 황영석 총사 외 9명

(대한민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30분 11월 정부 대표 황영석 등 6명 기준

: 정부 대표 8명 포함

- 한미 양국 2명 포함

Mr. Zupancic, Mr. Regmi 외 30명

- 2차 Mr. Sorenson (Denmark. 의사)

Mr. Gonzalez Poblete (Chile)

Ms. Iliopoulos - Strangas (Greece)

Mr. M. Yankovlev (Bulgarian Federation)

Mr. Burns. C (Canada.)

속기 필자.

- 질문 내용.

- ① 그래서 전두목의 전권에서 민족정부 이전으로 이어진 이어진다.
- ② 많은 학자들이 국가보안법의 제정에 대해 어떤 것.

- 최근의 Result : 2001년 2월 26일 보고관 Alan H. Rosenberg이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국가보안법은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러시아 Yakovlev은 국가보안법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특히 국보법(불법) ⇒ 연구 / Guba나 노동, 주민간의 간접적인 간접적인 협력과 같은 조건이다.

- 국보법 50일 구속금지 위반과 함께 학생운동에서는 학생운동과 학생운동이다.

- ③ 학생 운동이 학생운동에 고문에 관련 정의가 있는지를 묻는다.

- ④ 정치적 권리에 수사기관은 충사자. 특히 유탄연에 대해 그는 범죄와 관련된 교통이 없다는 사실 지정.

- ⑤ 고문 범위에 대한 명시적 유탄연 - 유탄연으로 학생 학생은 있다?

- ⑥ 구속 시설로 관련하여 동방의 초기 특히 영국은 유례 없이 구속사에 대한 의혹을 청탁과 부상 문제 인가.

- ⑦ 고문 범위에 대한 의사소통 확장 및 보장 문제 인가.

- ⑧ 고문 범위에 대한 법적 전제와 함께 학생 관련 문제는 있습니까?

- ⑨ 고문 범위에 대한 배상지 청구 배상의 의무를 주거나, 아니면 면책되는 경우, 특히 정부의 관료와 관료가 관료를 주거나, 아니면 재활, 회복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의.

(3)

(10). 사형제도는 어떤 범주가 있는지. 사형수 9동에 대한 조사.

(11) 청탁금수. 그에 따른 대상자 암호 지정. 한반도의 상황은
유비록 정부의 행적은?

(12) AI's Report & Amnesty Int'l 보고서에
고문 피해 사례 (박상희, 고예운, 유흥식, 박동우 김성민
등) 연방 - 설립 초기 활동

(13) 기타 다른 암호를 들었을 때의 충격적인 답변으로 어떤.

⇒ 한국에서 심의 전술 Russia 심의서 보다 "나는 원래
미국이나 일본 혹은 특히 중국과 대부분 한국 정부는 물론
제출한 보고서는 이전 행정부에 대한 노획 평가 때문에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즉 국정의 보호성 지침
즉히, 고문과 의무적 손해에 대해서 같은 원칙이 없음

<정부 답변 15:00 ~ 15:45> -- UN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미국이나} * 20,000 ^{국제연합회} 하고 답변 시작함

- ① 고문은 성질, 민족적 수호단체 최초한티 우연.
- 고해 총회 참석하고 전부.
-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 않아, 위험에 처한 군보 저정 강조!
- 군부는 책임질 뜻 (내용 확실 이전에 알고, 모르겠음) 약속.

2. AI's 보고서는 ^{언론} 대상 대상. (우리 나라 살해한 날짜는?)

제1) 전범의 기록과 같은 행위에 대해 제2) 진정성이 높았을 경우에
여전히 책임지는 것. ③ 책임 없는

- Amnesty Int'l 언론을 정부 ~~제1) 전범의 기록과 같은 행위에 대해 제2) 진정성이 높았을 경우에 여전히 책임지는 것. ③ 책임 없는~~ 전증하고,
- 특히 AI의 책 정교한 대변 (9월 방문 때)
- 막 충렬 사건 - 벤처사 13명이나 살해. 의사 검진.

3. 고난생님 청탁하셨습니다. 28711- 끝Soon 빠져나갈
청탁이 아예 없어 모두 조용히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4. 구속기간 (0%이 9월 9일 예상시 11월 1일로 늦어짐)에
39. 행의사 무죄로 0.2%는 남았으니 않는다는
증거다.
5. 법호인 험여로(심문시)는 보장 안됨 - 수사지연과
경찰권 윤선 보장된다.
- 구속되어 여전히 유행성 결핵 치료선 보장되며, incommunicado
권한은 없다.
6. 고문방지에 대한 기초적 후원다. 증거가 없거나 때로.
7. 국보제작과 1990년 이후 계속 즐기는 맛이.
국보제작업체에 대한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8. 험여로 험여로 즐기는 맛다.
9. 외로이 살지(대학원 과정은 없으니) 이동이 시도 있다.
10. 구속되어 대한 의료진은 충분히 되고 있다.
11. 혈액 521. 그는 유통 이후는 통한의사정치부 이용 가능성이
때로이다.

위유동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청탁당한을 매우 긴장하였다.
상당히 많은 질문(예를 들면 고문해제사례에 대한 Regime의 설명 등) 등
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그점에도 수원들의 추가질문이 많았던 것을
알았다. 일부이유의 답변 후 Pikis(Cyprus)의 간이처벌이 있었던
설정이 "화재"나에 대한 것을 - 일부이유로 서둘러 답변하겠다고 한.

Conclusions & Recommendations by the CATT.

by Mr. Zupancic

Introduction:

구체적이고 시급 맞춰 제출된 한국의 회초보법을 한영하여 한국정부에게 감사하는바이

증정적인 면:

1. 93년 이후 ~~한국~~ 달려진 양국간에 대해 한영한다.
2. 법개정 등은 한영한다.
3. 사연과 같은 조치를 격려한다.
4. 법률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족스럽다.
5.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권에 대한 처벌 및 고문으로 인한 자백을 거부한 사례들도 격려
6. 한국이 ~~한국~~ 암고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국제의 의식도 감사하는바.
7. US, France, Canada, Australia 와의 상호 법조약 (mutual judicial treaties) 을 격려한다.

장애요소 :

한반도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협약 2호 2항에 의하여 그 어떠한 특수한 상황도 고문이나 그의 비인도적 처벌/처벌을 용납하는 없음을 강조한다.

c. Obj of \rightarrow (Subject of concern)

① 체육은 1학년 일자리를 고민에 관한 정부 규정이 있다.

2. 1/67 OIS Report에 따르면 정치적 이유로
고무당하는 사례 많고, 군인체포와 같은 것을 가족이나
친척들이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특히 경찰관이나
군인에게는 같은 경우에 드물게, 경찰관은 경찰관이나

5. 국가보전법은 모호한 규정이나 자의적 적용조치 같다
— ~~국가보전법~~ 2001년 적용에 따른 내용은 매우 명확화되었다.

6. 예술가로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술은 예술이다.

7. 수사기관의 1차 10일 구속기간 동안 신체의 악역
설치할수는 없을 것이다.

D. Recommendations (Recommendations)

1. 경영 학교에 복학하는 그문에 대한 성의 표현 되어야 한다.

2. 국내에서 균형 양자/인체학적 기준과 같은 체적·질적 특성을 갖도록
한다.

3) 농사가 잘 농사사. ~~여름~~ 여름에 이른 봄 땅사에 대처 ~~하는~~ 농사해야 한다.

7. 금세월의 3,514에 대한 동급자연 기록 청탁해제를 한다.

8) NEDO's 보고기에 인쇄된 금세월 사망에
대한 증거와 함께 서면을 전해.
조사/수사하고

9. 구금 기간 (30일, 60일, 90일, 징역, 출석)에 대해.

10. 심문서 번호가 참여권 보장하니

11. 유언(증명, 헌서, ...) 첨부하자.

유원회는 3년 4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 사용에 대한 우리 표병
그리나 권고사항에 국보폐지 여부였음을 득감, 권고사항중
4항, 5항, 6항, 7항 8항이 우리에게 권고조치, 특히 6항과
관련하여 한국경부에 추가 보고 요구, 그에 대해 반박자료
제출 가능할 것

Ps. 간접영식(?) 내용 내용 알면 그대로 써어 주십시오.

간접영식(?) 편지 내용은 국보 폐지, 제작, 제작 등

국보제작: 제작자는 국보 제작 국보.

자세한 내용은 국보 제작 국보 제작 국보.